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25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윤지현전임 jhyun@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제조신고·수입신고의 수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기관의 관리 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항 신설 (제 4 조의 2)	- 5년마다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안전관리종합계획 포함 내용 -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 및 제반 절차 규정 마련
제조신고·수입신고의 수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 (제 6 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제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개정 (제 10 조)	- 임상시험계획 승인 조항 단서 규정 개정 * 승인 제외: 시판 종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거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의 임상시험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 10 조)	원칙적으로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나,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 등의 경우 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 가능

(3) 시행일

'24.08.07

I. 법령 개정사항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정한 임상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 등을 추가하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범위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의료기기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 시 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발급 규정 마련 (제 7 조)	제조신고대장 기재 사항과 함께 제조신고증 발급도 명시적으로 규정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정한 임상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 등 추가 규정 (제 20 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에 기존의 시판 중인 의료기기 사용 시험 등에 더하여 하기 기준 추가 규정 1)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정한 임상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 2) 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신호 등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3) 의뢰자 없이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중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범위 신설 (제 21 조의 2)	임상시험이 아닌 기관: 건축물 등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의료기기 대상 임상시험,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3) 시행일

'24.08.07

I. 법령 개정사항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등으로서 수입·판매업 등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를 추가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 준수사항에 수입신고 수리를 위한 수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시 첨부 서류 추가 (제 28 조)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시 첨부서류에 외화획득용 원료 신규 구분 기준 추가 및 제출 서류 규정 *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시험·검사성적서 2. 외화획득용 원료: 수출계획서

(3) 시행일

'24.08.07

II. 입안예고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 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통. 폐합하고자 하며, 권리사용료의 확정가격 일괄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 편의 제고, 무료 운임 과세방법 및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의 명확화하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권리사용료 (21 조)	권리사용료 확정가격신고의 일괄신고 대상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수입물품을 추가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22 조)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총지급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제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산출이 가능함을 규정
통상운임 (25 조)	운임 등이 무료인 경우 통상운임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43 조, 48 조)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규정

II. 입안예고**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입안 이유**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영양표시 대상 확대 (안 별표 4)	영양표시 대상에 77 개 품목 추가·확대(총 259 개, 전 품목의 90%) * 제외국과 같이 영양정보 제공 필요성 낮은 경우 제외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고카페인 주의사항 표시 신설 (안 별표 2)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g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으로 고카페인 의무표시 확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개선 (안 별표 2)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 주의사항 표시위치, 표시방법, 표시대상 식품 등을 명확히 규정
냉동식품의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개선 (안 별표 2)	빙과, 얼음류 및 아이스크림류에 표시의무 제외도록 단서 신설

II. 입안예고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제조환경, 공정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위해성 중심으로 평가주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한편,

현지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을 향상시켜 영업자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위생평가 주기 개선 (안 제 3 조제 1 항)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위생평가를 품목별 제조환경, 공정의 위해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 향상(안 제 3 조제 5 항)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한 이전 현지 위생평가 결과 적합이면서 총점이 95% 이상인 경우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추가 연장도록 하는 위생평가 우대조치를 도입.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치하는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관련 조치방법 명확화(안 제 7 조제 6 항)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에 대하여 수입검사강화 적용 및 현지실사 대상을 구체화하여 부적합 조치 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수렴기간

'24.09.26

II. 입안예고

4.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입안 이유

고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구체화 등 고시 운영사항 보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고시 적용범위 명확화	보세창고의 특허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의 제명을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명확화 (제 5 조)	외국인 운영인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운영인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명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확화 (제 5 조)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확인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제 6 조, 제 12 조의 2)	- 임차시설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 -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

II. 입안예고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서류 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 일부 물품이 통관 보류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분할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이더라도 B/L 분할신고를 허용,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및 문구 수정 등 현행 규정 반영하여 정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 제외(제 13 조)	-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중 분할신고되지 않은 물품 - 내로세 감면 대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B/L 분할신고 대상 확대 (제 16 조)	신고물품 중 일부가 통관이 보류된 경우 등은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1 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 (별표 5)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중고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 확대
자가사용 인정기준 정비 (별표 11)	-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담배 등 기호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규정 동일하게 정비

II. 입안예고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 원으로 적용

II. 입안예고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 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 원으로 적용

II. 입안예고

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입안 이유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출입절차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운영 기준 등을 개선하고,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세관의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 추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제 7 조의 2, 9 조, 17 조의 2)	- 수량 외 중량 단위 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를 허용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으로 관세영역의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반출 -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
외국물품 적정 관리를 위해 법령 적용 세부기준 마련 (제 17 조, 제 19 조)	-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등을 이동하는 때에 관세영역을 통해 원거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세운송신고 대상임을 명확화 -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의 반입물품은 장치기간에 관계 없이 긴급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준 개선 (제 41 조)	제 3 국간 전자상거래 물류의 국내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비율을 구체화

II. 입안예고

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신청인의 편의 제고 및 검사비용의 신속·정확한 심사와 지급을 위해 신청 서식 개정 및 검사비용 지원대상 명확화 등 그간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검사비용 신청서식 개정 (제 7 조, 제 10 조, 별지제 1호서식)	검사비용 심사·지급 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목별(①운송비,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및 검사방법별(①검색기검사, ②개장검사) 비용을 각각 구분 기재하도록 신청서식을 개정
검사비용 지원대상의 명확화(제 5 조)	-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 시점에 해당 화물의 향후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용어를 정비 -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하고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명확화
그 밖의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제 8 조, 제 14 조, 제 23 조)	-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세관 단위로 매년 수립·공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정비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기술평가위원회(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제도개선 사항 심의 등)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신설

II. 입안예고

1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방법 및 변경절차 규정 (안 제 4 조, 제 8 조)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근거 법령을 포함하여 명확히 명시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안 제 8 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의약품 제조(수입)업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함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약품 자료보호 대상 및 공개 항목 규정 (안 제 21 조의 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규정하며, 자료보호 관련 제품명,업체명, 자료보호기간 등을 공개 항목으로 규정함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규정 (안 제 23 조의 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약품을 규정함

(3) 의견수렴기간

'24.10.30

II. 입안예고

1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상대 관세당국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통지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에 체약당사국과의 합의한 방법을 반영하며,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산지 질문서」 및 「가산세 등 면제신청서」 서식 내용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위반사항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원산지조사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 수출조사 서면조사 후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산지 위반 원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위반 재발방지와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개최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 71호 서식)
체약상대국에 조사요청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으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으로도 가능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 동시 회신 외에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만으로 요청 및 회신 가능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식 개정	- 「FTA 관세법 시행령」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규정 개정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서류 변경 사항 반영 - 「원산지조사 표준 질문서」의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자료 「근거 조항 및 보관대상자료」 현행화 - 「FTA 관세법 시행령」 보정이자 규정 신설에 따라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상의 근거 조항 변경
직제 변경에 따른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변경	-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조사부서 순서 정비 및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 변경

III.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8.4.10.부터 2023.4.9.까지 독일 소재 수출자 등으로부터 64 건으로 유리 실험용 주사기 및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를 수입하면서 유리 실험용 주사기의 품목번호는 HSK 제 8413.91-9000 호로,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의 품목번호는 HSK 제 9031.90-9000 호 신고한 후, 두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13.부터 2023.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유리 실험용 주사기의 품목번호를 HSK 제 7017.90-0000 호(기본관세율 8%, 한-EU FTA 협정관세율 0%)로,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의 품목번호를 HSK 제 3926.90-9000 호(WTO 양허관세율 6.5%, 한-EU FTA 협정관세율 0%)로 각각 변경한 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2023.8.23. 및 2023.9.5.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000 원, 부가가치세 합계 000 원 및 가산세 합계 000 원 총합계 000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부과처분 취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 조 제 2 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3) 결정일

2024.07.02 (조심2023관0143)

III.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 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CKD(Complete Knock Down)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데, CKD 부품 중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는 부품인 제조 CKD 부품과 국내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은 부품인 구매 CKD 부품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우즈베키스탄 소재 해외구매자에게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 명의로 CKD 부품을 수출하였는데, 쟁점수출자들은 각 수출신고서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쟁점수출자들로 기재하고,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였으며, '환급신청인 구분'은 "2. 제조자"로 기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안산세관장에게 쟁점 CKD 부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
- 라. 처분청은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CKD 부품 중 청구법인이 수입하거나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 CKD 부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여 부당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 합계, 총합계 000 원을 각각 징수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계약은 해외구매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수출업무를 쟁점수출자가 대행하고, 쟁점수출자는 해외구매자에 대한 신용 공여의 대가로 이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3) 결정일

2023.07.11 (조심2023관0124)

III. 조세심판사례

3.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주식회사 A 는 2020.10.5.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마스크 제조용 MELT BLOWN NONWOVEN FABRIC 40G 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000 달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 년 4 월 중국 국적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23.10.30.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청구인에게 저가신고 차액에 대한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의 메신저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내용및 입출금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4.07.26 (조심2024관0027)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

-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부처 협업 과제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 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 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상령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对**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 개 품목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사전 등록하세요!

- 국내에서 최초로 아시아 규제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장품 규제조화 논의
- 10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10월 16일까지 무료로 참가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라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사전 참가 신청을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하고 그 나라의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를 연결해 왔다. 참고로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포럼을 통해 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국산 화장품이 아시아에서도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당국, 산업계, 학계 등 화장품 분야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가 간 화장품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유럽 화장품협회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뷰티와 첨단기술의 융합 ▲디지털 라벨링 ▲첨단기술을 활용한 뷰티제품 개발·생산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등에 대한 강연과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 '2024 화장품 위해 평가 국제 심포지엄' 등도 이번 포럼과 연계하여 함께 개최한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10월 16일까지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누리집(<https://oneasiaforum.org>)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 운영사무국 문의 : admin@oneasiaforum.org / 070-8165-0210

식약처는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이 아시아 규제당국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그간 화장품 규제환경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조화 및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외 임상 참여 근거 마련, 시·청각장애인 대상 점자 등 표시 대상 마련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 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8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힘들어요! 소상공인) 1등급 신고체계 일원화로 의료기기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②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③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등이다.

① 기존에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제품과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른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처리한다.

*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시험검사성적서, GMP 인정서 등 자료 제출해 심사받음

② 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 등 인체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해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등 특정 관리기관에서만 대상을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등의 경우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③ 취약계층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대상·방법·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자 등의 표시를 권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자가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4.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 수급동향 예의 주시하며,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8.15(목)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9.15 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59.2 백만불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43.8 백만불)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의 경우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아울러, 광해광업공단에서 약 80 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 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안티모니 금속 수입국(수입액 기준) : '23년 중(37.8%), 태국(30.9%), 베트남(29.0%), '24년 상반기 태국(59.8%), 베트남(23.5%), 중(16.2%)

또한,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 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크로웨이브 전력 10kW 이상, 진동수 915 MHz 또는 2450MHz 인 특수 설계 또는 제작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MPCVD) 설비 등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형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이것만 기억하세요!

- 관세청,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배포
-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 목적 … 주요 검증 품목, 위반사례 등 담아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원산지검증>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에서 자유롭게 확인

□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

○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의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메뉴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 한편,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25.上 접수예정)이다.

○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 윤주현 원산지검증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 기업의 80%에 달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약 16%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FTA 포털 메뉴 화면>



FTA 일반현황	FTA 활용정보	FTA 활용제도	FTA 기업지원	원산지검증	FTA 자료실	CO-PASS	참여마당
FTA란?	+ FTA 활용정보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찾아가는 상담센터	원산지검증	+ 협정별 자료실	CO-PASS 진행정보	FTA 고객상담센터 +
FTA 체결현황	+ FTA 활용률	+ 인증수출자 제도	+ 컨설팅 사업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 협정별 집행지침	국가별 C/O 발급정보	공지사항
FTA 한눈에 보기	FTA 법령/국제정보	협정별 유통관리	YES FTA 전문교육	검증시례	+ FTA 서식문서	+ C/O 발급 등록정보 +	주요한반도변사례
FTA 협정문	FTA 비즈니스 모델	+ 국내제조확인서	공익관세사 제도	+ 주요국 FTA 위험동향	협정별 세율정보	+ 차사 C/O 발급이력	해외관세정보 신고
FTA 용어집	세율정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수출물을 주요 검증동향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CO-PASS 참여신고	관련 사이트 +
RCEP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사전심사	홍보 영상		FTA 상대국 통관정보		
APTA	+ HS 연계표		참고자료		e-Book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등 2건 조사도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9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주)ई케이케미칼, 수입자 (주)삼양패키징, (주)GS글로벌, (주)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목)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24.7.30.~11.29., 관세율 6.62~7.83% 부과)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